

4과목 수출입통관

01. 관세의 성격

- 1) 조세적인 성격
- ① 관세는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② 관세는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 ③ 관세징수권의 주체는 국가이다. ④ 관세는 법률·조약에 의거 징수한다.
- ⑤ 관세는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 2) 소비세적인 성격
- ① 관세의 궁극적인 대상은 소비자이다.
- ② 관세는 생활필수품보다는 사치품에 중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관세는 전가된다.
- 3) 특수한 성격
- ① 관세는 무역장벽이 된다. ②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한다.
- ③ 관세는 관세영역을 전제로 부과한다. ④ 관세는 대물세이며, 수시세이다.

02. 관세의 기능

- ① 소비억제 ② 수출의 촉진 및 교역조건의 개선
- ③ 수입의 대체 및 국제수지의 개선 ④ 국내산업의 보호
- ⑤ 재정수입의 확보

03. 관세법 적용의 원칙

- ① 관세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신의성실
- ③ 세관공무원재량의 한계

04.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
- (수입 관련 서류 5년, 수출·반송 관련 서류 3년,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등은 2년)

05. 관세의 납부기한

- ① 납세신고를 한 경우 :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 ② 납부고지를 한 경우 :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③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06. 월별납부

-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함)

07.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시 1년을 넘지 아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 연장할 수 있음

08. 과세의 4대 요건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관세를 및 과세표준

09. 과세물건 과세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로 수입물품이 과세물건임.

10. 납세의무자의 종류

-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특별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보증인, 제2차 납세의무자, 양도담보권
- 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이 있음.

11.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① 일반적인 경우 : 5년
- ② 무신고 수입행위 : 7년
- ③ 부정한 행위(관세포탈 등)를 한 경우 : 10년

12.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5억원 이상의 관세 : 10년, 그 이외의 관세 : 5년

13.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5년

14. 통관의 요건

- 1) 허가,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 : 약사법 해당 물품 중 의약품 및 한약재 등
-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물품 :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등
- 2) 의무이행의 요구
-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 대하여 문서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3) 통관표지
-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대상 3가지)

15. 통관후 유통이력신고

- 수입자와 유통업자(소매업자 제외)는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함.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6. 원산지증명서의 요건

- 원산지국가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국가
- 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 이외에 3가지

17.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물품

- ①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그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 ② 우편물(수입신고 대상 우편물 제외)
- ③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 ④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 ⑤ 기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18. 수입신고 생략물품 :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 물품 등

19. 신고서에 의한 간이신고(수입) 물품

- ① 국내 거주자가 취하는 해당 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
- 로 인정되는 면세대상 물품 등
- ② 해당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건품
- ③ 설계도 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 ④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급수단

20. 신고인 : 화주(수출은 제조자 포함) 또는 관세사등

21. 수입 / 반송신고의 기한 및 가산세 징수

- 수입 또는 반송물품을 보세구역(보세구역 외 장치장소 포함) 반입일(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함. 미신고 시 과세가격의 2%의 범위에서 가산세 징수(500만원 한도)

22. 여행자나 승무원 휴대품 미신고시

-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단, 휴대품·탁송품
- 또는 별송품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되,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

23. 원양수산물 신고

-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출 후 대금결제
- 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 Cargo Receipt, B/L, Final(Fish) Settlement]가 첨부된
- 수출실적보고서(수출신고서 양식 사용)를 한국원양산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 전송하여야 함.

24. 잠정수량 / 가격 수출신고 대상물품

- 가스, 액체, 전기, HS 제50류 내지 제60류 중 직물 및 편물, HS 제71류부터 제83류까지의 귀금속
- 및 비금속제 물품 등은, 적재완료일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의 경우 18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 실제공급한 수량 등을 신고할 수 있음.

25. 목록통관 대상물품

- ① 유해 및 유골, ②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③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 ④ 외국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반출하는 물품, ⑤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 보도용품, ⑥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⑦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서비스 및 개별소비세
-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⑧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 이하의 물품, ⑨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자가사용물품

26.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30일 이내 적재

-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함
- 1년의 범위에서 횡수에 관계없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적재기간 연장을 할 수 있음

27. 보세구역의 종류

- 지정보세구역(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
- 장, 보세판매장) 및 종합보세구역

28. 보세구역의 장치원칙

-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9. 보세구역의 장치물품

-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②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 ③ 우편물품
- ④ 압수물품
- ⑤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 ⑥ 검역물품

30. 보세구역의 장치허가

-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 한 물품을 보세구역
- 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31. 물품의 반출입신고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꼭
시험에 나오는 핵/심/체/크

2025년 2월 15일(토) 시험대비

원산지 관리사

이패스코리아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 원산지관리사 시험정보 ❖

▶ 시험 시간 : 02월 15일(토) 11:00 ~ 13:00

▶ 합격자발표 : 03월 07일(금)

2025 무역자격증 대비반

▶ 환승 & 재도전 60%할인 과정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외환전문역2종, 국무사, 무역영어,
보세사 과정 수강 시 **120일 수강보장 & 불합격연장**

▶ 관세사 연계 50% 할인 EVENT

이패스 관세사 유료수강생의 경우!

무역 전과정 정가대비 50% 할인 & 불합격시 연장

▶ 무역자격증 보유자 관세사 준비과정 할인

관세사 1차 & 2차 준비 과정 30% 할인

[교육과정문의] 이패스코리아 1600 - 0522

www.epasskorea.com

1과목 FTA협정 및 법령

01. 지역경제통합 순서

자유무역협정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 ⇨ 완전한 경제통합

02. WTO와 FTA비교

- 1) 공통점 : 회원국 경제발전 및 경제적 후생 증대의 목표 동일함. 다른 회원국 경제에도 유리한 여건이 조성됨.
- 2) 차이점 : WTO ⇨ 다자주의, FTA ⇨ 양자주의

03. FTA경제적 효과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투자효과, 무역굴절효과, 우회수입방지효과

04. 발효된 FTA협정(발효순)

칠레(04.4.1), 싱가포르(06.3.2), EFTA(06.9.1), 아세안(07.6.1), 인도(10.1.1), EU(11.7.1), 페루(11.8.1), 미국(12.3.15), 터키(튀르키예)(13.5.1), 호주(14.12.12), 캐나다(15.1.1), 중국(15.12.20), 뉴질랜드(15.12.20), 베트남(15.12.20), 콜롬비아(16.7.15), 중미(19.10.1), 영국(21.1.1), RCEP(22.2.1), 이스라엘(22.12.01), 캄보디아(22.12.01), 인도네시아(23.01.01), 필리핀(24.12.31)

05.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아세안, 인도네시아 : 발급일부터 1년(잘못 발급된 C/O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C/O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C/O의 발급일부터 1년), 칠레 : 서명일부터 2년, 페루 : 서명일부터 1년 (C/O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 미국 : 서명일부터 4년, 콜롬비아 : 서명일부터 1년, 호주 :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 캐나다 : 서명일부터 2년, 뉴질랜드 : 서명일부터 2년, 베트남 :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잘못 발급된 C/O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C/O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C/O의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싱가포르, 인도, 터키, 중국 : 발급일부터 1년, EFTA, EU, 영국, 중미 : 서명일부터 1년, RCEP, 캄보디아 :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이스라엘 :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

06. 다른 법률과의 관계 협정 > FTA관세특례법 > 관세법

07. 상호대응세율 한-아세안 FTA협정에만 규정됨.

08.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TRQ)

- 1) 추천방식 : 추천서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함. 단,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음
- 2) 선착순 방식 : 수입신고순으로 선착순 배정함. EU(납치), 미국(납치, 명태, 민어), 뉴질랜드(홍합), 중국(논다랑어, 소라, 해파리)

09.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 1) 협정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 ⇨ 협정세율
- 2) 협정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단,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적용세율이 같을 때에는 협정관세 적용 가능)
- 3)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관세, 조경관세(공중도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세율보다 우선 적용

10.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 1) 사전 신청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C/O는 갖추고 있으면 됨).
- 해당 물품의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의 상호, 성명, 주소 등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함.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함에 도착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함)
- 사후심사원칙(예외적으로 사전심사하는 경우 2가지가 있음)
- 2) 사후 신청
-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 ②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정신고를 하거나 품목분류 오류에 따라 관세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일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45일)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함.
- 경정청구(2개월 이내 통지), 관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함.

11.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면제물품

- ①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단,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외)
- ② 동종동질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 ③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 다만, 사전심사의 조건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 ④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상표, 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물품

12.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 1) 수출물품 :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함.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
- 2) 수입물품 :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통지받기 전에 세액정정, 수정신고 등을 하여야 함.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아세안, 칠레, 페루, 호주,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	미국, 콜롬비아	EU, EFTA, 영국, 튀르키예, 캐나다, 이스라엘	인도, 중국, 싱가포르
공제 / 집적	공제 / 집적 / 수원가	MC	공제